

광주지방법원 2021. 5. 4 선고 2020가단516778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광주지방법원 2022. 7. 14 선고 2021나58690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1. 5. 4 선고 2020가단516778 판결

전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유병연

소송대리인 B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허재영

피 고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민근

변 론 종 결 2021. 4. 13.

판 결 선 고 2021. 5. 4.

주문

1.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5. 11.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20. 5. 11. 접수 제8706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1) (주)E(이하 ‘소외 E은행’이라 한다)은 2009. 5. 29. F에게 975,000,000원을 변제기 2010. 5. 29., 이자율 연 10%, 지연배상금률 연 2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D, G, H은 같은 날 소외 E은행에게 F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2017. 3. 23. 소외 E은행으로부터 F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을 양수하고, 2017. 4. 14.경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그 후 원고는 D, G, H을 상대로 위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8. 11. 22. ‘D, G, H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2,431,722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8차전27068),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D은 2020. 5. 11.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20. 5. 11. 접수 제87064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은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원고에 대하여 2009. 5. 29.자 연대보증약정에 따른 372,431,722원의 연대보증채무(주채무자 : F)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위 연대보증채권은 채권자취소권에 있어서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피고는, D이 2019. 9. 2. 원고에게 42,800,000원을 변제하였고, 원고가 그 무렵 D에 대한 나머지 채무를 면제해 주었으므로,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갑 제10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D이 2019. 9. 2. 원고에게 42,800,000원을 송금한 사실, 그 무렵 원고의 직원 I과 D이 D의 채무가 면제된다는 취지의 대화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7 내지 10, 1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D이 2019. 9. 2. 원고에게 42,800,000원(= 40,000,000원 + 2,800,000원)을 변제함으로써 면제된 채무는 원고가 이 사건에서 피보전채권이라고 주장하는 채권이 아닌 다른 채권[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G에 대한 채권(D이 연대보증하였음) 및 H에 대한 채권]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소외 E은행은 2008. 4. 8. G에게 20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D, H은 같은 날 소외 E은행에게 G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2017. 3. 23. 소외 E은행으로부터 G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을 양수하고, 2017. 4. 14.경 D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9. 6. 11. D에 대한 위 연대보증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결정을 받고(광주지방법원 2019카단51170), 2019. 7. 19. G, D, H을 상대로 위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동부지방법원 2019차전18748), 2019. 9. 2. D으로부터 40,000,000원을 송금받은 후 2019. 9. 2. 위 지급명령 신청을 취하하고, 2019. 9. 5. 위 가압류를 해제하였다.

② 소외 E은행은 H(D의 동생)에게, 2015. 10. 2.에 8,000,000원, 2015. 10. 23.에 5,800,000원을 대여하였고, 원고는 2017. 3. 23. 소외 E은행으로부터 H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을 양수하고, 2017. 4. 12.경 H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그 후 원고는 H을 상대로 위 차용금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8. 3. 20. 지급명령을 받았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8차전5632), 2018. 7. 16. 위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광주지방법원 2018타채57232)을 받았다. 원고는 2019. 9. 2. D으로부터 2,800,000원을 송금받은 후 2019. 9. 5.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해제하였다(D은 2019. 9. 2. 원고에게 2,800,000원을 송금하면서 본인 계좌의 거래내용에 “H”이 표시되도록 하였다).

③ 위 I은 2019. 9. 2.경 D과 통화하면서 위와 같은 G의 채무(D이 연대보증한 채무) 중 D이 변제한 4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H의 채무 중 D이 변제한 2,8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면제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은 원고에 대하여 위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예약은 D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 D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추정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은 피고와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함으로써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켜 채권자들을 해하게 됨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2) 피고는 2014. 8. 19. D에게 57,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위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하나, 설령 피고가 D에 대한 57,000,000원의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무

따라서 피고와 D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매매예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D에게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옥희

목 록

(1동의 건물의 표시)

광주광역시 남구 동

[도로명주소] 광주광역시 남구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트러스경사지붕 22층 아파트

지하층 671.1642㎡, 1층 내지 4층 각 677.2128㎡

5층 내지 14층 각 672.1728㎡, 15층 내지 22층 각 573.5690㎡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광주광역시 남구 답 9999㎡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1층 호 철근콘크리트구조 84,9996㎡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9999분의 39.0585 끝.

